

2004년도 화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3-256
----------	-------

제출년월일 : 2004. 5. 2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임진각 관광지내 생계형 소규모 상가의 경영악화로 무질서한 증축등 비위생적 판매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 매년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먹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및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휴게소와 먹거리의 동시제공과 함께
-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로서의 주변 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휴게소를 건립·운영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취 득 재 산 명	위 치	면적(m ²)	금액(천원)	비고
임진각 휴게소	문산읍 마정리 1360-50	150평 규모	300,000	신축

□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 임진각휴게소

- 건물위치 : 문산읍 마정리 1360-50(잡종지)
- 건축규모 : 150평 단층(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 건물배치 : 고속도로 휴게소형으로 배치
- 재 산 액 : 300백만원
- 취득방법 : 건물신축
- 활용계획
 - 기존 임진각 관광지내에서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부스(11개소)를 철거하고 휴게소로 흡수
 - 휴게소내 영업시설을 유상임대(별도 협약서 체결)
 - 시에서 휴게소 건립 후 영업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 및 관리 운영비 등 제반경비는 업주가 부담.

□ 토지위치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서

(2004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총 계	토지	4	4,333							
	건물	4	2,030				4	4,333	914,530	
	기타						5	2,525	3,900,000	
계	토지	4	4,333				4	4,333	914,530	
	건물	4	2,030				5	2,525	3,900,000	
	기타									
1 매입(신축)	토지	4	4,333				4	4,333	914,530	
	건물	4	2,030				5	2,525	3,900,000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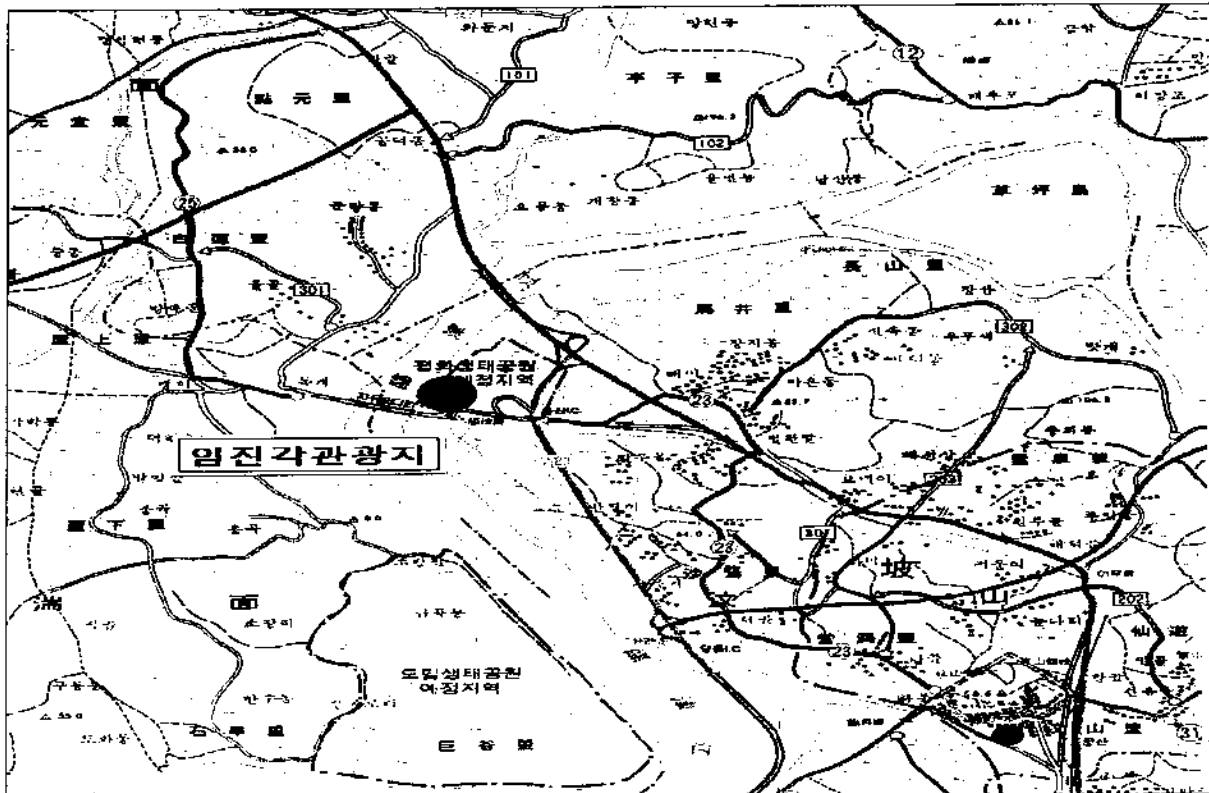
회계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04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

연번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계	토지							
	건물	1 동	495	300,000	2004년	임진각휴게소	파주시	
	토지(전)							
1	토지(전)							
2	건물	문산읍 마정리 1360-50	495	300,000	2004년	임진각휴게소	파주시	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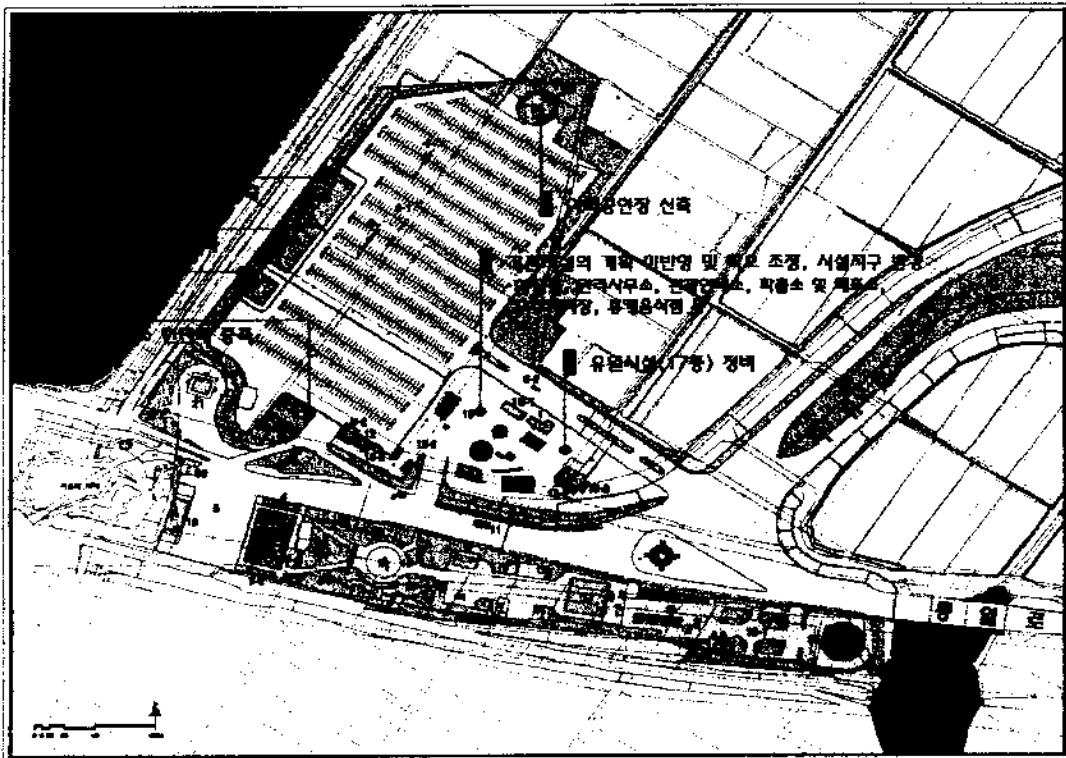
□ 조감도 및 위치도



□ 임진각 관광지 종합계획도(참고자료)

임진각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 종합 계획 도



■ 범 록

■ 공공편의시설

- 1 관력사무소
- 2 관광안내소
- 3-1 화장실1
- 3-2 화장실2
- 3-3 화장실3
- 4 피콜로(목표소)
- 5 광장(임진각광장)
- 6-1 주차장
- 6-2 주차장
- 오금정산소
- 7 오수처리장

■ 상 가 사 설

- 8-1 임진각
- 8-2 임진각 급수시설
- 9-1 대동음식점1

9-2 대동음식점2

- 10-1 관여매점1
- 10-2 관여매점2
- 11 기념품 판매점
- 12 휴게음식점
- 13 휴게소

■ 운동오락시설

- 14 관광열차
- A 과남고
- 15 유희시설
- 15-1 사무실/휴게소
- 15-2 변전실
- 15-3 강변고

■ 휴양문화시설

- 16 기념비공원
- a 남북통일 기념비

b 통일역 탐

- c 무궁화 취적벽
- d 나라사랑벽
- e 호국용사 주모벽
- f 김포공항 폭발사고 희생자 주모벽
- g 미국군 참전기념비
- h 참전비(미공수단, 일본계 미국인 참전비 등)
- i 통일의 햇불
- j 주모벽
- k 임진각 지구전적비
- l 모형전시관
- m 여 트루만 대통령 동상
- n 자연보호관장탑
- o 감요섭 시비
- 17 북한 전시관

⑥ 여의무기전시장

- 18-1 조경휴게소1
- 18-2 조경휴게소2
- 19 명예단
- 20 망향의 노래벽
- 21 평화의 종각
- 22 길마는 달리고 싶다
- 23 아웅산 위령탑
- 24 다용도 전시관
- 25 야외 공연장
- 26 장단풍 전시관 (영토물산 판매점)

■ 기타시설

- 27 녹 지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4년 5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5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임진각 관광지내 생계형 소규모 상가의 경영악화로 무질서한 증축 등 비위생적 판매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 매년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먹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및 휴게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휴게소와 먹거리의 동시 제공과 함께
-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지로서의 주변 경관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휴게소를 건립·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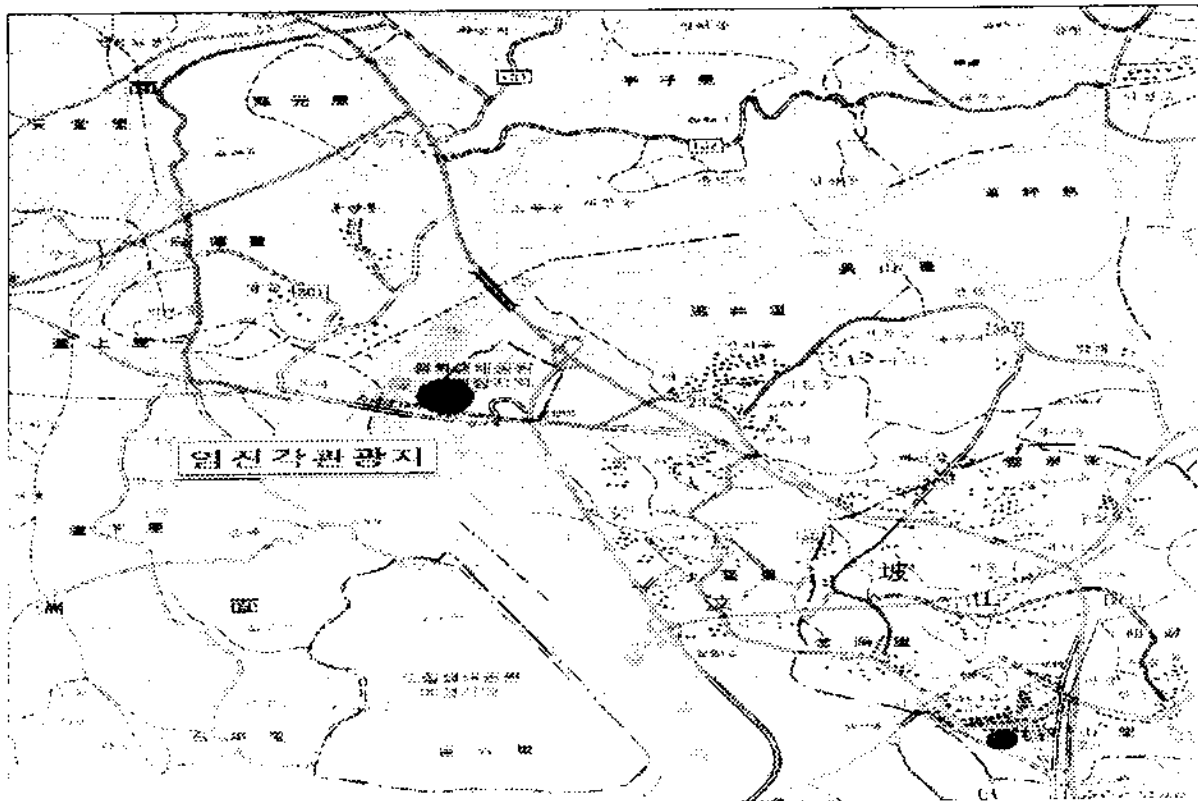
취득재산명	위 치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임진각 휴게소	문산읍 마정리 1360-50	150평 규모	300,000	신축

3. 공유재산 취득 세부내역

○ 임진각 휴게소

- ◇ 건물위치 : 문산읍 마정리 1360-50(잡종지)
- ◇ 건축규모 : 150평 단층(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 ◇ 건물배치 : 고속도로 휴게소형으로 배치
- ◇ 재 산 액 : 300백만원
- ◇ 취득방법 : 건물신축
- ◇ 활용계획
 - 기존 임진각 관광지내에서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부스(11개소)를 철거하고 휴게소로 흡수
 - 휴게소내 영업시설을 유상임대(별도 협약서 체결)
 - 시에서 휴게소 건립 후 영업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 등 제반경비는 업주가 부담.

○ 조감도 및 위치도



4. 검토의견

-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50번지(잡종지) 임진각관광지 주차장 부지 내 약 150평 규모의 휴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시설은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단층으로 건립하여 고속도로 휴게소형으로 배치될 계획으로 현재 임진각 관광지 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생계형 부스를 철거하고 기존 운영중인 부스를 휴게소로 흡수하여 유상임대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임.
- 임진강관광지는 매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 명소로 지속적인 관광편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내년에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 행사개최 등에 대비하여 주변의 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동 시설의 건립을 통해 현재 소규모 상가의 비위생적인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고 현대화된 휴게시설(공간) 및 먹거리 판매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서 관광객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변 경관을 새롭게 할 수 있어 관광 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됨.

- 그러나 동 시설의 설치를 위한 관광지조성계획변경 절차와 임진각관광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차질 없는 행정절차의 이행이 요구되며 임진각관광지 주차장 부지 내에 이미 추진 중인 장단 콩 축제장과 야외공연장건립, 금번 휴게소 설치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주차장의 추가적인 확보대책이 요구됨.

《地方財政法》

제77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産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地方自治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69호]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改正 1994.3.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2001. 10.10 조례 제410호]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